

의안번호	2212262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5. 11. 6.
추 계 번호	25D446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72억 7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,574억 1,100만원(연평균 714억 8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계	연평균
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설치 (안 제12조제5항)	67,270	68,615	69,985	71,381	80,160	357,411	71,482

주: 1.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설치(안 제12조제5항)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하여 추계

2. 본 추계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요 통행로 1개소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	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찰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장비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(모바일·스마트기기에 설치된 모바일 앱 등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터넷 검색 등 스마트기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장치)를 추가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주요 통행로 1 곳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
 - 스마트기기 사용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,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, 유치원 등에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의 필요성이 낮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0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0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주요 통행로 1곳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1개씩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보행안전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설치 수량에 1개당 설치 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(수량) 2027년 1,269개, 2031년 1,397개로 추정
 - 경찰청에 따르면, 2024년 12월말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6,295개소이고 2020~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0.4% 증가
 -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수는 앞서 언급한 연평균 증가율(0.4%)에 따라 증가하며, 5년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주요 통행로에 스마트기기 제한장치의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
 - 일부 초등학교에 개정안에서 규정한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함

[표 2]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설치 수량 추정: 2025~2031년

(단위: 개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	6,320	6,345	6,371	6,396	6,422	6,448	6,473	-
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설치수량	-	-	1,269	1,269	1,269	1,269	1,397	6,47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1개당 설치 비용) 2027년 5,301만원, 2031년 5,738만원으로 추정
 -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,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1개당 설치 비용은 2024년 5,0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
[표 3]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1개당 설치 비용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1개당 설치비용	5,301	5,407	5,515	5,625	5,73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72억 7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,574억 1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량(a, 개)	1,269	1,269	1,269	1,269	1,397	6,473
1개당 설치 비용(b, 만원)	5,301	5,407	5,515	5,625	5,738	-
추가재정소요 (=a×b, 백만원)	67,270	68,615	69,985	71,381	80,160	357,4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요 통행로 1개소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